

## 사례별 공결 가능 사유 및 개신누리 공결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 (사례1)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및 PCR검사 후 결과 대기 중의 결석

#### (항목선택) PCR 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사유1) 코로나19 자가 검사 결과 양성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의료기관 시행) 또는 PCR검사를 실시한 경우

(사유2) 동거인이 확진되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료기관 시행) 또는 PCR검사를 실시한 경우

(공결기간)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일(1일)  
PCR 검사(검체채취)일 ~ 결과 통보 시까지

(증빙서류)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검사결과지, 본인의 이름과 검사일, 최종 결과일 등이 표기된 문서 혹은 해당 내용을 포함한 문자 캡처본

※ 전문가용신속항원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만 해당,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사례2)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에 해당되어 검사일부 7일간 공결 신청

### (사례2) 코로나19 확진되어 결석

#### (항목선택)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사유) PCR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  
※ 방역대책본부지침에 따른 기간내 전문가용신속항원 검사 양성 결과도 인정

(공결기간)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일 또는 PCR 검사(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  
※ 7일차 24시 격리해제

(증빙서류) 본인의 이름과 검사일, 양성 확인 결과 등이 표기된 문서 혹은 해당 내용을 포함한 문자 캡처본

※ 다만 7일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 추가 공결 신청 가능  
(1) 위중증 상태가 지속될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결 신청 (사유: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한 질병)  
(2) 추가적으로 확진자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통보내역을 첨부하여 공결신청(사유: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 사례별 공결 가능 사유 및 개신누리 공결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 코로나 관련 기타 사례 인정 여부

(사례1) PCR 검사(의료기관 시행하는 신속항원검사)  
(사례2) 확진자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공결 신청 불허**

예) 의심증상이 있어 자가검사키트 사용으로 인해 수업 결석  
→ 공결 불인정

(참고)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3월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전부 수동감시로 전환”('22.2.25.)
- 교육부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5판”('22.2.28.)

### (사례3) 기타 사례

**(항목선택) 코로나 관련 항목이 아니라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한 질병’ 항목으로 신청 가능한 경우**

※ 학과장 날인을 받은 공결승인신청서 첨부 필요

(사유) 신속항원검사, 자가검사키트 등의 결과는 음성이나  
의심증상 지속으로 인한 결석

(공결기간) 증빙서류 상 명시된 필요기간

(증빙서류) 진단서,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